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1477호 2023년 7월 6일(목)

입법예고

-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7월 6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 우리 지역의 공익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활동 등을 지원하고자 일몰기한이 경과 및 도래한 감면 규정에 대하여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지역경제에 지속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고, 감면조항 중 세부조항에 기재된 법령이 타 법령으로 분리 제정된 사실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수산식품에 관한 법령 인용 규정 변경

- 수산식품 관련 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근거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업·어촌 및 발전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수정

나. 감면사항 일몰제 적용기한 연장(2024년 12월 31일까지)

구 분	조 문		감면세목	감 면 내 용
감면기한 연장(5)	안 제3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자동차세	-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 까지 연장
	안 제5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	재산세	-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 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구역 안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 까지 연장
	안 제6조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재산세	- 지역특산물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연장하고, 수산식품에 관한 법이 분리 제 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수정
	안 제8조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재산세	- 농공단지에서 휴업 또는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것으로 연장
	안 제10조	시장현대화 사업에 대한 감면	재산세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및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 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의 재 산세 감면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

4. 자치법규안 : 불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7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세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1) 주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세무과(부과평가팀)
- 2) 연락처 : 033-639-2156 (FAX 033-631-0778)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세무과 부과평가담당(033-639-215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6월 30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2023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

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2년 6월 30일까지 면제한다.

1. · 2. (생략)

② · ③ (생략)

제5조(문화재) ① 「강원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생략)

제6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3

----- 2024년 12월 31일-----
-----.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문화재) ① -----

----- 2024년 12월 31일-----

----- 2024년 12월 31일-----
-----.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
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
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
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
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
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
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
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
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
을 받은 자

2. · 3. (생략)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산
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
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

제39조제1항-----

-----2024년 12월 31
일-----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2. · 3. (현행과 같음)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 ---

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 2024
년 12월 31일-----

 -----.

제10조(시장현대화사업) -----

 ----- 2
024년 12월 31일-----.